

제300회 임시회
2011. 5. 20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1. 5. 20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정지숙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5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5월 16일

(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생략)

가. 제안이유

-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도모
-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

나. 주요내용

- 행·재정적 지원(안 제2조)
- 공무원의 파견(안 제3조)
- 유효기간(부칙)
 -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손자용)

금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충청북도가 행·재정적 지원과 공무원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에서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정적 지원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부칙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음.

동 조례안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을 위하여 조직위 운영의 도 지원 근거 마련 및 대회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등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경기시설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(이하 “대회”라 한다)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원회가 속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재정적 지원 요청시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위원회는 대회 종료후 대회기간이 속한 해의 연말까지 사업정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